따라서 주민등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호적제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家'중심의 호적제도는 개인별 또는 부부별 편제방식으로 바꾸면서 주소등록제도를 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7]. 이 방안이 우리 국민등록제도를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행정효율이라는 목적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편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호적제도가 자신의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면 굳이 현재와 같은 엄격한 주민등록제도는 사실상 필요없게 되거나 필요하다 하더라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과다하므로 보다 우선적 가치인 인권보장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호적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이 분야 전문가들의 제안이 제시되어 있고, 이 토론에서 따로 제시할 능력은 되지 못한다. 다만, 국민등록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본다면 3대호적기재금지원칙이 적용되는 부부중심의 호적제인 일본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7) 따라서 장영아연구원이 보고서에서 호적제도개선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주민등록제도 중심의 통합방안'은 올바른 개선방안의 하나 볼 수 없다.

호주제 폐지 - '전통주의자'들의 허구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고 은 광 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

1. '전통주의자'들의 주장.

최근 유림측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한국씨족연합회는 "바람직한 가정의 모델은 전통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가족법 내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조항을 손대어 자체로 가족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7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한다(전남대 정환당, 서울대 박병호, 고려대 최달곤 교수 등).

한국씨족공동체연합 부총재 구상진 변호사는 "남자와 여자는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가정 내 남녀의 역할이 같지 않다는 전제에서 시작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에서 남녀 동등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된다. 논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화 풍토의 문제이다."라고 주장하고 동덕여대 조준하 교수는 "호주제를 없앤다는 것은 우리 전통 가족제도 자체를 파괴시키는 행위이고 가족의 불화와 단합을 깨뜨려 청소년 노인문제를 유발시킨다. 가족의 화합을 위해 승계순위를 정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여성신문 '99. 4.2.) 또 경찰대 법학과의 정기웅 교수는 "인간 누구나 자기의 혈통이 면면히 이어가는 것을 원하며 제사를 계승하는 등 자기의 부계혈통을 관습적으로 제도화시킨 민법상의 '家制度'를 통해 이를 달성한다. 전래의 미풍양속인 家를 계승하고 제사를 계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주제는 의미 있는 것"이라 말한다. ('98 금산법학 창간호)

동성동본 금혼의 헌법불일치 판정에 대하여 유림들이 지금까지도 '금혼법 개정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남자만이 씨앗을 생산하며 본관과 성씨가 같으면 한 형제자매라고 생각하므로 '상피 붙을 것'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98. 7. 13. 권오홈)

본관과 성씨가 같으면 한 형제자매이며 부계혈통과 제사를 계승하는 것이 '아름다운 전래의 미풍양속'이라는 신념을 가진 그들의 허구를 어떻게 깰 것인가.

2. "남자는 씨, 여자는 밭. 남자가 씨를 생산하므로 '아들로 대잇기'를 해야 한다."-???

(틀린 그림) (맞는 그림)

↗ 조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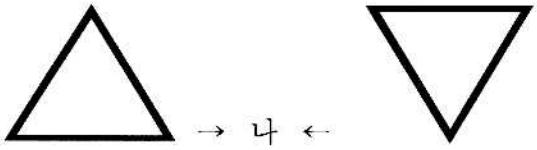

→ 나 ←

외국인들에게 위의 그림을 보여주면 모두 맞는 그림을 골라내지만 한국인들의 99% 이상은 틀린 그림을 선택한다. 그렇게 교육 받아왔고 또 주변의 제도와 문화가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나의 10대 조상은 2의 10제곱(1024명)이며 20대 조상은 2의 20제곱(104만 8,756명)이다. 그 중에 성씨를 물려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을 뿐이다.(3대 독자, 7대 독자라는 말은 거짓이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혈통, 가문, 족보, 남성중심의 명절문화등은 모두 부정되어야 한다. 공정하지 않으므로, 이것 때문에 인구 절반이 희생되고 있으므로. 이것의 해결 없이는 양성평등한 제도와 문화는 정착될 수 없으므로. 민주사회로의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 이것은 거짓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중의 정서를 옳게 이끄는 것은 시민단체, 여성운동가들의 몫이다. 무지로 인해 혈통고수라는 강박감을 갖는 이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3. 왜 위계질서에 집착하는가?

황제, 왕이 있던 시대, 그들은 스스로를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 하였고 '권력의 독점과 세습'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다. 일체의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수평적 질서'를 인정할 수 없었던 사회였으며 '철저한 위계질서'로 '아랫것'들을 다루었으므로 그 시대의 가장 큰 가치는 '上下간의 질서'였다.

출신계급, 혈통, 나이, 성별이 상하를 규정하여 질서를 세우는 잣대였고 그것은 법이나 도리, 전통이나 관습의 이름으로 강요되어 왔다. 그 시대의 그러한 '미숙한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현재까지 남아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참을 수 없는 생활의 보수'를 야기하는 것으로 족보, 종친회, 제사를 비롯한 관혼상제문화(명절문화), 호주제 등의 남성중심 제도와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서구와 같이 '혁명'으로 봉건왕조를 무너뜨리지 않았으며 계급사회에 대한 조직적 저항 없이 현대사회로 이행해 왔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갖는 비민주성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한다. 군사문화나 직장문화, 가족문화에서도 상당부분 지속되어 왔으므로 차별문화의 비민주성이나 '수평적 민주질서'가 갖는 '아름다운 위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호주제이다.

4. 남녀차별적이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논리- 호주제

호주승계(1순위: 직계비속남자, 2순위: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순위: 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국 민법의 기초적 법감정은 딱 두 가지이다.

첫째는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법 감정이고(태생학에 관해 무지했던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니 이해는 가지만 더 이상은 유지되어서는 안된다. 외도하여 낳은 핏덩이 아들이 열 명의 딸보다 앞선다는 것은 남자의 혈통은 여성의 인권에 앞선다 혹은 '고추의 신성함'은 혼인의 신성함 보다 앞선다는 '무지하고 과

격한' 주장이다.) 둘째는 결혼한 여성은 남자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수단, 도구에 불과하다는 법 감정이다.(효도? 동방예의지국?-아들, 딸이 어머니의 호주가 되고 손자가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판에? 아름다운 전통가족?)

그리고 이 두 가지 법감정(논리)은 無識, 無知에 의해 유지되어 왔고 법은 또한 이러한 무지와 무식에 힘을 보태어 왔다. '남자는 씨, 여자는 밭'이라고 생각하는 무지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만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강박감이 생기는 것이다. 씨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난핵과 정핵이 암술의 씨방에서 수정되는 것을 모르는 '무식'이 그들을 그토록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5.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70년대 후반, 한국에는 '여성학'이 소개되었고 이제 양성평등문화를 갈망하는 많은 남녀가 이 땅에 생겨났다. 더 이상 어깨에 힘주고 '에헴'하는 남성중심문화로는 행복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전통이 행복한 삶을 억압한다면 고쳐야 한다. (중국은 아이를 엄마 호구부에 올린다. 모두 화장하고 제사도 딸 아들 관계없이 형편 닿는대로 1년~3년 하는 것으로 그친다. 5행에 따른 돌림자도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올바른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모두 '개혁'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출생성비는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법이 결혼한 딸은 가족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법이 부계혈통만 인정하여 딸만 낳으면 대가 끊어진다는 생각을 부추기니 열 명의 딸을 낳을 수는 없고 그냥 죽이는 것이다. 대구의 초등학교 3학년-백말띠-의 구성은 여자 54명, 남자 111명이다. 여자는 순종하고 희생하는 종속된 존재라고 '법이 부추기고 있으므로' 뱃속의 여아들을 감별해서 모두 죽이고 있는 것이다.) 출생성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여성을 '남성 혹은 남성 가문에 종속된 존재', '이차적 존재'로 규정하는 모든 제도와 관습을 개혁해야 한다. 우선적으

로 가부장제를 가능케 하는 법을 개혁해야 한다.

가부장제를 가능케 하는 법적 뒷받침은 바로 호주제와 부계성씨의 대물림이라고 보여진다.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마련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조항 중 한국이 유일하게 유보하고 있는 조항은 16조 사항 '여성의 성(姓)도 평등하게 가족의 성으로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한국정부는 유보를 풀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하여 유엔으로부터 항상 추궁을 당하는 궁색한 처지에 있다. 따라서 여성계는 부계성(父系姓)에 대한 '도전'에도 역시 더욱 당당하고 씩씩한 입장을 가지고 대중을 설득해야 할 것이며 명절, 관혼상제의 남성중심문화도 양성평등문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생활문화상의 개혁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연도별	출생수 (명)	성 비 (%)	성감별후 여태아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비 고
1988	635,367	113.26	24,596	
1989	641,482	111.75	20,434	
1990	651,718	116.48	34,563	
1991	711,042	112.39	24,725	
1992	731,598	113.63	29,555	
1993	716,637	115.39	34,571	
1994	721,848	115.22	34,286	
1995	714,206	113.28	27,743	
1996	689,083	111.66	21,681	
1997	666,633	108.41	10,897	
합 계			263,051	

수신: 인권운동 사랑방 이창조님
발신: 고은광순(홍명한의원) 577 0601.2.3(f)

아래글은 헤드라인 뉴스(시사주간지)에 실릴 글(기사이름으로)중 추가로 쓴 글인데 사례의 경우 '호주제'의 '악질성'의 이해를 쉽게 해줄 것이므로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립니다.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보다 우월하다'거나 '여자는 남자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법감정을 호적법 행간에서 읽을 수 있다. 이는 고질적이며 광범위한 여성차별을 낳는다.)
★사례1) 'ㄱ'씨는 아주 똑똑한 딸 둘이 있었는데 늦바람이 들어 아들을 얻었다. 아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입적이 가능하였으므로 'ㄱ'씨 사망후 본처에게서 낳은 딸들을 제치고 핏덩이 아들이 호주를 승계하였다.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와 딸들이 겪어야 했던 허탈감과 분노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들이 이력서를 쓴다면 이렇게 써야 한다. '호주 ***(다른 여인이 낳은 어린 남자아이)의 모(또는 누나)'
★사례2) 40대 초반의 'ㅁ'씨는 남매의 엄마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 남편이 산업재해(중풍)를 입게되자 시부모는 아들을 돌본다는 이유로 데려가고 얼마후 손자까지 데려가 버렸다. 'ㅁ'씨는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현재 딸과 함께 전셋집에서 살고 있으며 한달에 500만원 가까이 나오는 산업재해보상금은 시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부모는 아들의 불행을 며느리 사주탓으로 돌리며 이혼소송을 청구해 놓고 있다. 결혼생활 중에도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와 이곳저곳을 뒤지며 "살림을 왜 이렇게 못하냐"며 트집을 잡았고 "아들을 낳으면 제왕절개 수술비를 대주지만 딸이면 안준다" "제사준비하려면 10일 전에 내려와라"는 등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선혀 며느리의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았다. 결혼한 여성의 부가입적(夫家入籍)은 이처럼 남자의 부모들에게 '아들부부의 결혼생활'을 좌지우지할 '권력'을 주고 있다.
★사례3) 6남매의 막내인 'ㅈ'씨는 모시고 살던 어머니가 사망하자 의료보험공단에 장제비를 신청하였지만 '불가'통보를 받았다. 어머니는 본처가 어린 아들 하나를 남기고 사망한 집으로 시집을 가서 전처의 아들과 6남매를 낳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하셨지만 전처의 아들이 '호주'였고 어머니는 '호주의 생모'가 아닌 계모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사례4) 'ㅅ'씨는 결혼후 5년동안 3회의 임신을 했지만 어쩐 일인지 번번히 유산되고 말았다. 시부모는 "남의 집에 들어왔으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구박을 했고 아들에게도 "남의 집에 들어온 여자는 순종하지 않으면 때려야 한다"며 'ㅅ'씨 면전에서 폭력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녀는 지금 이혼후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했지만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키우려고 한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사생아'일 경우에만 엄마의 호적에 올릴 수 있으므로 아이가 당할 수모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실제로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불화, 폭력이 '남성우월'이라는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일어나며 '남자만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무지에서 '아들선호'가 생겨나는 것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아만직인 여아낙태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들로부터도 크레이지 피플(crazy people)이라는 소리를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영국, 독일, 미국에서 취재온 기자들은 한국의 이러한 법, 관습에 대해 이렇게 말했음) 헌법이 추구하는 가족내 양성평등이 새로운 법에 의해 보장될 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속에서 사회 전체의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서준식님등께 늘 감사!!!)

수신: 인권운동 사랑방 이창조님
발신: 고은광순(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사례5) 올해 나이가 70인 ㅂ할머니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두었다. 딸들은 결혼해서 외손자들 보았지만 며느리 셋은 딸만 낳아 모두 7명의 친손녀를 얻었다. 손녀는 앞에서 늘 '고추도 못달고 나온 년들', '나는 복 없는 늙인이' 푸념만 하면서 며느리와 손녀딸들을 구박하던 ㅂ할머니는 막내며느리도 딸을 낳자 설날이 되면 돌아앉아 아들며느리, 손주들의 세배도 받지 않는 것으로 '분노'를 표시한다. 자식들은 "어머니 살아 생전 '원'을 풀어드리자"고 합의했고 그 결과 둘째 며느리가 지금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지만 '또 딸'을 낳을까봐 신경쇠약에 걸려있고 성감별도 고려하고 있다. 많은 노인네들이 '남자만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무지에 길들여져 있어 '성(姓)도 퍼뜨리지 못하고 결혼하면 남의 집으로 입적되어 버리는 쓸모없는 딸, 손녀만 있을 경우 '대가 끊어져 조상에 죄를 짓고 장차 제삿밥도 못얻어 먹는다'는 강박감에 시달린다. 유전에 관한 무지와 그를 뒷받침해주는 민법으로 인해 여성들은 '이등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발표 2

성비불균형과 호주제도

곽 배 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1. 서 론

지금부터 20년전인 1977년도 가족계획과 관련하여 당국이 내세운 표어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말이 있었다.

그당시 인구는 약 4천만으로 아마도 세계적으로는 20위 정도의 순위였을 것으로 기억이 된다.

1960년 통계에 의하면 한 여자가 낳은 자녀가 6.5명었으나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정부 당국의 끈질긴 노력으로 1970년대에는 4.2명으로 감소하였고 그 후 점점 줄어들어 77년도에는 2.0명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그후로는 웬일인지 당국의 가족계획사업도 어떤 장애에 부딪쳐 더 이상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같이 가족계획사업이 더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남아선호사상이 아닌가 한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자식이 많으면 복이 많은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은 곧 아들을 가리키는 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선진국의 경우 노후 문제는 완벽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의하여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확립이 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설령 그렇다해도 국민 대다수의 정서로 볼 때 노후문제는 개인적으로 내자식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그러한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국민대다수

FROM PAGE 01

의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근본원인을 필자는 가족법과 관련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남아선호관과 가족법

과거 우리나라 가족법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었다.

가족법이 이와같이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었던 것은 바로 가족법이 남녀를 차별하여 남성과 여성을 불평등하게 규정한 많은 조항들 때문이었고 그것은 곧 가족법이 지금까지 남아선호사상의 온상이 되어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남아선호관의 온상이 되었던 가족법도 지난 1958년 1977년, 1989년 등 크게 세차례에 걸쳐 상당부분 남녀평등, 부부평등의 방향으로 고쳐졌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 가족법에 남아선호관의 가장 큰 간이 되는 호주제도, 동성동본금혼규정 등의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음으로 인해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아들을 선호하고 딸을 경시하는 풍조가 남아 오늘날 회한한 성비불균형을 초래하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 호주제도

현행 가족법에 존치되어 있는 호주제도는 원래 남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기본골격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전적으로 남성, 아들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여기에 따르면 여성은 오직 남성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즉 과거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 그리고 남편 사망후에는 아들에게 의존하여 한평생 살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 당시 여성들은 인간이기 이전에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였으며 남성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는 이와같은 남계혈통과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 호주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남성중심의 강력한 가족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하였던 호주제도는 평등한 부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 시대인 지금에도 여전히 살아있어 여성들을 불리하게 만들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가족법은 여러번의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남녀를 차별하여 여성을 불리하게 만들었던 많은 조항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 고쳐졌다.

호주제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89년도 3차 개정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래 여성계에서 바랬던 바 호주제도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은 대안에 따라 상당부분호주의 권리 의무 등이없어졌을 뿐이다.

즉 호주제도 완전폐지는 아직 국민정서에맞지 않는다 하여 대안이마련되었는데 그 대안에 의하면 호주의 강제계승, 남녀평등정신에 위배되는 규정등 실제로 유명무실한 호주의 권리의무 등에 관해서는 모두 그 규정을 삭제하였고 나아가 호주제도자체를 상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호주제도 자체를 없애지 않고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말만바꿨으며 호주순위를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에 따라 남성은 일등인간, 여성은 이등인간으로 규정짓는 우리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게하였다. 이러한 호주승계는 결국 호주라는 신분상 규정과 더불어 가족법상 가부장제의 형태를 그대로 살리는 결과가 되었다.

다시말하면 현행 호주제도가 비록 그 권리의무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것이라 해도 호주라는 신분상 규정과 아들우선의 호주순위가 가족법에 남아있는 한 가족법상 남녀차별의 정신을 암암리에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고볼 수 있다. 이것은 또 나아가 남아선호관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호주제도에 관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가 될 장남은 어떤 경우에도 호주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호주를 포기하고 분가할 수도 있으므로 분가 후 결혼하면 아내와 단독 호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호주의 장남은 본가(큰집)의 호주상속을 위해서만 양자로 갈 수 있었던것을 개정법에서는 삭제하고, 장남도 임의대로 다른 집에 양자로 갈 수 있게 했다.

FROM PAGE 02

셋째, 호주가 자녀없이 사망했을 때 죽은 호주를 위한 사후 양자를 들일 수 있게 정한 것을 폐지하고 살아있을 때만 양자를 들이도록 했으며, 유언으로 들일 수 있었던 양자제도도 폐지하였다.

넷째, 여자가 호주인 집에 양자가 들어오면 호주였던 여자는 가족이 되고 새로 들어온 양자가 호주가 되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양자가들어와도 여자가 계속 호주의 지위를 갖게끔 고쳤다.

다섯번째, 호주에게 주어졌던 재산상속상의 특권, 예컨대 호주와 가족 중누구의 재산인지 분명치 않아 호주의 것으로 인정했던 것과 호주에게 50% 특혜 등을 없애버렸으며,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았던묘토, 묘전(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과 족보, 제사가구 등도 호주라 하여 당연히 받는 대신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받도록 하였다.

여섯번째, 호주의 가족에 대한 권리, 의무 규정을 삭제했는데 그 내용은처가 전 남편의 자식을 입적시킬 때 필요했던 남편과 남편의 호주(장남일 때 시아버지) 등의 중 남편 동의 만을 조건으로 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전 남편의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있을 때 얻도록 되어있는 호주의 동의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족이 호적에서 떠날 때 필요한 호주의 동의권은 없어지지 않았다.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삭제했다. 예컨대 호주는 가족에 대해,가족은 호주에 대해 가졌던 부양의무를 삭제함으로써 부부간, 친권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와 기타 친족간의 부양의무 규정으로 대신하게 했다.

이밖에도 호주의 가족에 대한 강제분가권,거소지정권, 가족에 대한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 청구권과 취소권(미성년자인 가족의 후견인이 될 권리등)을 삭제했다. 또한 호주가 되기 위한 양자는 반드시 양부와 동성동본이어야했지만, 개정법에서는 성과 본이 달라도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호주가 되게 했다. 그리고 일단 호주가 된 양자는 어떤 경우도 파양을 못하게 했었으나 1991년부터는 협의 내지는 재판을 통해 파양을 할 수 있도록 고쳐졌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 그야말로 호주제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색할 정도로 호주의 권리, 의무규정 등을 삭제하여 얼핏 보면 현행법상 호주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것처럼

PAGE 03 FROM

보이지만, 호주제도가 존재하므로 호주라는 말 자체에서 뿜어지는 억압과 구속,지배의 감정 그리고 아들, 딸,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 이어지는 호주승계 순위가 그대로 조문에 있는 한 남녀 차별의 근간이 되는 남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제는 여전히우리나라 가족관계를 지배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남게 될 것이다.

2) 동성동본 금혼규정

우리 민법 제809조를 보면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16조, 817조에는 '만일 이러한 혼인을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말하자면 셀수도 헤아릴 수 없는 젊은 남녀들이 수천 수백년 전 조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혼인할 자유를 박탈당하는 근거 조문인 셈이다.

이 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졌으며 얼마나 많은 젊은 남녀가 사랑하면서도 결혼할 수 없음을 비관하여 목숨을 버렸는지 그 예를 여기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비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더많은 죽음과 가정파탄의 비극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법이존재해야 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즉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혈통을 중요시 하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일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존재해야 근친간의 결혼을 막아 우생학상 불행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인륜도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우선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가라는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도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신라,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 동성혼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오히려 왕가나 귀족 사이에서는 근친혼이 행해지기도 했었다.

그 후 이조시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의 고조와 더불어 유교사상과 함께 동성동본 금혼 제도를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를 수백년동안 철저히 지키다 보니 마치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요 전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에서도 이 법의 전근대적 성격과 불합리함을 들어 80여년 전에 폐지했다.

다음 우생학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역시근거가 없다. 즉 세계적으로 동성동본 혼인에

26쪽 패스 생략!

3. 결 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아선호관은 앞에서도말했듯이 단시 부모의 자연적인 아들 딸 차별본능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그보다는 사회적법적으로 고착화된 남성중심의 사회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이 남성중심의 가족제도가 보편적이고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있는 아들을 선호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해도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법적, 사회적으로 남녀를 평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아직도 갖고 있으면서 이사회에 성비불균형이라는, 설명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희한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치관과의식구조는 당연히 변화되어야 한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한 첫번째 작업으로 우리는 우선 가족법상 남아선호관의 온상이되고 있는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규정의 폐지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이 두가지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다시는 이땅의 많은 여성들이 아들을 열망하여 태아의 성감별을 시도하고 딸인경우 유산을 감행하는 비인간적이고어리석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1997. 1. 29.

토론회 — 남녀 성비 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프레스센터)

주최: 여한의사회, 한국여성단체 연합.

보 론

의료인이 본 남아선호관의 실태와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

고광순(홍병한의원 원장)

대한어한의사회가 '95년 11월,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00여명중 90%의 한의사가 '아들낳는 처방'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또 이들중 60%의 한의사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에 응했다고 답했다. "4녀 출산후 남편이 외도끝 하고 시집에서 박대하여 결혼생활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호소하던 여성" "종가집 맏며느리인데 딸 셋을 낳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던 여성" "아들 낳기 위해 유산을 20여회 했던 여성" "아들 낳을 때까지 낳으라는 시부모 말을 듣고 찾아온 딸셋 가진 여성" "아들 없이도 부부금슬이 좋으나 앞으로도 행복이 유지될지 불안하여 신경쇠약에 걸려있는 여성"……

이상은 한의원을 찾아와 '아들 낳는 약'을 요구하던 여성들이 토해 놓은 사연들의 일부이다.

이들이 아들을 낳으려는 이유는 '집안 어른들의 요구(60%)' 또는 '대를 이으려고(30%)' 등이 90%를 차지함으로써 여성 스스로의 주체적 희망에 의해 아들을 낳으려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에서 아들을 통해 '뿌리'를 내려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려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친정식구가 약을 지으러 오는 경우(12%)도 시집의 요구를 거스르지 않아야 '부대끼지 않고' 무난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감별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해 검찰이 몇몇 산부인과의사를 구속한 것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인위적 성비 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의사나 조산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한겨레 96,7).

PAGE 05 FROM

그러나 몇몇 의료인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로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아들밝힘증' 이 사라지리라고는 볼 수 없다. 한국 사람들은 '대잇기' 를 열망한다. '대잇기' 를 통해서 조상과 자신이 일군 명예와 재산을 보존하거나 자신의 제사를 보장받음으로써 죽은 후에도 이승과의 탄탄한 연결고리를 보장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대' 라고 하는 성을 퍼뜨린 '씨' 를 생산할 수 있는 아들을 통해서만 이어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성의 난자를 인식할 수 없었던 시절의 무지에 기인한다. 난자의 존재가 오래전에 밝혀졌음에도 그러한 무지가 현실을 지배하는 이유는 잘못된 편견과 관습을 선도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 때문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호주제(일제 식민치하에서 유입된, 그리고 현재의 일본에서는 사라진), 太家입적제도는 여성을 '남편의 집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존재' 로 규정한다. 그리 '남편의 집안으로 들어 온 여성' 에게 남편가문의 씨앗을 퍼뜨릴 의무를 우선적인 덕목으로 요구한다.(성감별을 요구하거나 아들낳는 약을 달라고 눈물로 애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요구에 순응하는 사람들이며 이에 응하는 양,한방 의료인은 자신이 배운 학문의 힘으로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여성이 가진 씨앗인 난자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고는 호주제 이외에도 한국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그 남성의 한국국적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씨가 감다하여 동성동본 남·녀의 결혼을 금하는 금혼법, 아이를 낳으면 너무나 당연히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민법 등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결혼을 하면 한국인은 일본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일본인의 성을 따르게 하며, 일본인의 조상을 위한 제례를 행하고, 사회의 주도권을 대부분 일본인이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당연히 일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일등국민 취급을 받고 한국인은 이등국민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집안에서 '귀남이' 대접을 받는 남성들은 사회에서도 '귀남이' 대접을 받는 일등국민이 된다. 집안에서 '후남이' 대접을 받는 여성들은 사회에서도 '후남이' 대접을 받는 이등국민이 된다. 얼마전 구정고등학교의 내신등급 사건에서 나타났던 "여자들이 왜 남학생들의 창창한 앞길을 가로막나? 시집이나 가면 될 것을…" 이라는 논리나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사건은 당연하다. 전리품이니까", "남자 한명은 전세계의 여자를 합친 것보

다 위대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통신상의 젊은이들은 이런 풍조가 낳은 이 시대의 불행한 산물이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차별하는 사회에서 이등국민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여아를 성감별후 낙태하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적게 낳는 자식 속에 '일등국민'을 반드시 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한·양방 의료인들도 돈벌이를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팔거나 환자의 눈물어린 하소연에 마음이 약해져서 '아들낳아 행복찾기'에 같은배를 타려고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부도 이제 '아들을 간절히 희망하게 하는 사회의 법과 제도와 관습'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편견과 무지에 그 뿌리를 둔 법과 제도와 관습이 여성을 차별속에 방치하는 한 이를 개인적을 피해가려는 사람들의 아들낳는 처방요구나 계획적인 살인이나 다름없는 성감별 후 여아낙태요구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

의료인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처벌만으로 성비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실로 구두위로 발긁기 식의 우매한 소치에 불과하다. 정부는 말로만 세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조치들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려야 한다. 호주제의 철폐, 여성에게만 불리한 국적법, 여성의 난자를 인정하지 않는 동성동본 금혼법 등 불합리한 법의 개정과 아울러 여성의 사회활동을 억압하는 법률과 제도 그 밖의 무수한 남성중심의 가족문화, 사회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 남아선호관은 이미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97.1.21-

토론회 - 낙태 성비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프레스센터)
주최 : 대한여한의사회, 여성단체연합.

FROM PAGE 06

부모성(姓) 함께 쓰기 선언

우리는 태아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로 인간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면서 남아선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부모성(姓) 함께 쓰기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신생아의 여남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5명(1994년)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는 고질병이 되어버렸다. 일년에 3만여명의 여자태아가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상황이 부끄럽게도 바로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남성중심의 불평등 사회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가부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들, 손자, 딸 순으로 승계되는 호주제, 부계혈통만을 중시한 동성동본금혼제도, 여성이 남성의 집안에 시집가도록 되어있는 부가(夫家)입적제도, 아들이 제사를 모시는 관습,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다'라는 강고한 가부장적 의식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족제도의 불평등은 사회에서의 남녀불평등의 기반이 되고 있다. 여성을 남편의 피부양자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 여성을 임시직, 보조직 등 주변부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노동시장의 구조, 명백한 사회적 재생산이라 할 수 있는 임신, 육아의 부담을 개별여성, 개별가정의 부담으로 돌리는 사회제도 등이 모두 남성중심의 가족관, 가족제도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사회변화에 맞추어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와 성차별적인 사회제도. 관습. 태도등이 변해야 한다. 가장 먼저 수백년 동안 지속되어온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가 변해야만 여아태아를 살해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차별적인 생명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여아낙태의 부끄러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을 명시한 가족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정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종래의 가족관과 관습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 하나의 방법으로 성씨제도의 민주화를 우리는 주창한다. 남녀의 평등한 참여와 합의에 의해 성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아버지 성만을 써온 우리 세대부터 부모성을 함께 사용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한다. 우리의 이 운동이 여자이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여남평등사회를 향한 의식개혁의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1997년 3월 9일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부모성(姓)함께 쓰기 선언자 일동 대표선언자 이이효재외 170명

부모성 함께 쓰기는……

부모성 함께 쓰기는 1997년 3월 9일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 대회에서 부모성(姓) 함께 쓰기 선언자(이이효재외 170명)들에 의해 선언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한 가부장적 의식구조가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있습니다. 남자만이 생명의 씨앗을 생산한다고 생각하는 무지에서 출발한 법과 관습 때문에 일부지역에서 셋째아이의 출생성비는 300(남):100(여)에 이를 정도로 한국의 인구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성차별은 필연적으로 국가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로 확산되고, 이것은 민주사회를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부부의 합의에 의해 공동성(姓)을 정하거나 아이들에게도 부,모중 한쪽의 성을 선택하여 물려줄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대를 잇는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여자아이만 골라내어 낙태시키는 야만적 행위는 한국 이외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무시되고 소외되어왔던 모계를 살려냅시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이 우리 사회의 에너지를 높일 것입니다.

♥ 부모성 함께 쓰기를 하려는데.....

1) 후대에 갈수록 복잡해지지 않는가?

이것은 문화운동이므로 후대는 후대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할아버지(아버지의 아버지)의 성과 할머니(어머니의 어머니)의 성을 택하면 글자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로 김서갑돌과 이정갑순이 아이를 낳으면 김정하나, 김정두울이 됩니다. 어감이 나쁘면 순서를 바꾸거나 할머니성을 택할 수 있습니다.

2) 혈통, 뿌리찾기가 흐려진다.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그간의 혈통, 뿌리라고 하는 개념은 여성을 전적으로 소외시킨 독선적 개념이었습니다. 남성중심으로 획일화된 질서는 양성중심의 문화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들을 통한 대잇기'라는 허구에 기초한 강박관념 때문에 일년에 3만 이상의 여아를 감별후 살해하는 국민정서는 계속 보호받아야 할 정서가 아닙니다. 지구촌의 한 사람, 단군의 아들 딸, 성실하고 당당한 시민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국민정서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부모성 함께 쓰기를 잘 하려면?

뺏지를 항상 달고 다니며 이웃에게도 설명해줍니다. 필명이나 예명으로 늘 사용하여 생활화 합니다. 부모성을 쓴 이름으로 명함을 만듭니다. 동아리, 단체모임에서 이와 관련한 행사를 합니다. 남녀를 차별하는 호적법, 국적법등 모든 법과 관습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변화되도록 늘 노력합니다.

〈뺏지구입, 감동에피소드→'부모성 함께 쓰기' 모임 간사 고은광순
☎ 02) 577-0601, 2, 3(f) 에게로〉

A8 60

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고은광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준비위원-

한국은 1983년 5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마련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고 1984년 12월 27일 2개항(제9조 여성 및 자녀의 국적관련조항, 제16조 혼인과 가족관계 관련 일부조항)을 유보한 상태로 비준하였으며 이 협약은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하여 왔다. 위 유보내용중 제16조 제1항(다)(라)(바)호에 대한 유보는 1990년 가족법개정에 의하여 1991년 3월 15일 철회되었고 국적관련조항도 최근 개정되었으므로 언뜻 보기에는 제16조 제1항 (사)'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를 보장할 것'만이 국내법과 상치되어 유보중인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에 맞추어 협약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제반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性)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 유의하고...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고...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제 원칙을 이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모든 형태 및 양태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한국이 유보하고 있는 것은 제16조 제1항 (사)호의 '가족 성(姓)...등을 선택할 권리'만이 아니다.

1. 여성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는 한국의 호주제

오늘 결혼식장에서 화사하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신부는 맞절을 하는 신랑과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헌법이 정한대로 신부와 신랑은 평등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한다'가 바로 정답이다. 사랑하는 신부와 신랑은 평등한 가족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법이 그것을 막기 때문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하는 호적법이 바로 그 주범이다.

조선여인들에게는 삼종지도(三從之道)가 강요되었다.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의 말을 듣고 좇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 순위로 (1) 직계비속 남자, (2)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3) 처, (4)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5)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라고 규정하여 21C를 코앞에 둔 한국의 여성들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고 있다.

호주(戶主)라 함은 한 가정의 주인이라는 뜻이며 호주인 가장이 죽으면 1개월 이내에 호주승계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승계의 순서가 직계비속 남자(아들과 손자/ 아들과 손자는 결혼과 관계없이 가족이다.)→가족인 직계비속 여자(딸/ 딸은 결혼하면 가족이 아니다.)→처→어머니→며느리로 되어 있다. 호주가 죽으면 아들이 호주승계를 하고(아들의 나이와 출생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외아들이 결혼해 아들을 남기고 아버지인 호주보다 먼저 죽었다면 손자가 호주승계를 한다.(손자의 나이와 출생순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들도, 손자도 없을 경우 비로소 결혼하지 않은 딸이 호주가 되며 미혼의 딸도 없을 경우 비로소 처가 호주가 된다.

따라서 호주승계순서를 보면 한국의 법이 가족구성원의 중요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남편→아들→손자→딸→처→어머니→며느리로 이어지는 호주승계 서열에서 보여지듯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 아들이 죽으면 손자의 말을 듣고 좇으라는 사종지도(四從之道)를 한국여성들에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꼴이다. 오늘 결혼식장에서 화사한 웃음을 짓고 있는 신부는 남편보다는 물론이고, 아들, 딸, 장차 수십년 후에 태어날 자기의 손자보다도 가정 내에서의 법적 지위가 낮다. 이 땅의 '병적인 모성찬양신화'는 이러한 법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민법은 '남편의 씨앗으로만 낳았다'고 생각하는 아들, 딸과 손자를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인 아내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유전(遺傳)에 관

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여성을 대를 잇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야만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민법은 이렇듯 철저히 여성에게 차별적이며 '비(非)가족적'이다.

2.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한다.

호주제 중심의 호적법은 위와 같이 가족구성원간의 평등을 해쳐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제10조) 원리이념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 결혼한 여성에게 남성집안으로의 편입을 강제하는 부가입적제(夫家入籍制)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호적제도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호적법 제8조) 결혼한 여성은 호주로 되어있는 시아버지의 자부(子婦)로 입적되거나 호주인 남편의 호적에 처로 입적한다. 만약 시아버지가 장남이었던 남편보다 늦게 죽었다면 시동생이 호주가 된다. 남편의 사후에 아이들과 함께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살더라도 호주였던 시아버지의 사후에 호주승계를 받게되는 시동생이 새로운 호주가 되는 것이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가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무릇 세상의 결혼이라는 것은 성숙한 남녀가 양가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인데 결혼한 한국의 여성은 남편집안의 하부구조로 편입됨으로써 시집이라고 하는 남편의 집안에 복속하는 존재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얼마전 컴퓨터통신에 올라온 갓 결혼한 여성의 글에는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남편 할아버지의 제삿날이 친정아버지의 생신과 겹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살아 생전에 생신날 찾아뵐 수 없다는 한탄이 적혀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한번도 보지 못한, 돌아가신 배우자의 할아버지보다는 살아 계신 내 아버지가 소중하지 않은가? 그러나 결혼한 여성은 부가입적(夫家入籍) 때문에 순식간에 남편집안의 하부구조로 편입되어 남편집안의 행사에 누구보다도 더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물론 따로 호적을 독립한 둘째아들의 아내인 경우에도 '부가입적의 호적감정'은 이처럼 여성들을 남편의 집안으로 복속시킨다. 힐러리나 오드리헵번이 자기 아버지의 생신에 참석하지 못하고 남편의 죽은 할아버지 제사준비를 하는 것이 의무처럼 부과된 세상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국의 남성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시집을 왔으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되었으니 당연히

친정아버지 생신참여 보다 시할아버지 제사준비에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이 여자의 운명, 의무 아닙니까?")

많은 시어머니와 많은 며느리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 역시 시어머니, 며느리 개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남자만이 중심이 되는, 자연스럽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다. (시스템 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은행의 번잡함이 순서표에 의해 일거에 해소되었다고 말한다. 남편의 집안과 아내 사이의 갈등도 호주제로 인한 부가입적제가 사라지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다. 아니 발생할 소지가 없어진다. 물론 기득권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빠른 감정정리'가 요구되긴 하지만 말이다. '내 집안에 들어와 내가 길들여야 할 우리 집 사람,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 아들을 낳아 대를 잇도록 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고가 여성에게 그간 얼마나 불합리하게 강요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것이었는지가 곧 드러날 것이다.)

더욱이 부부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므로 함께 사는 엄마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럴 경우 자녀의 호적을 엄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아버지의 사망 이후라도 엄마와 자녀는 호적에 함께 기록될 수 없다. 남성은 혼인외 자녀를 낳더라도 아내의 동의 없이 자기의 호적에 올릴 수 있고(아주 최근 들어서야 동의를 얻도록 개정됨) 재혼을 하더라도 본인과 자녀의 호적이 문제되지 않지만 재혼하는 여성의 경우 남편의 호적에 자신만 입적하게 되어 남녀의 차별은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된다.

결혼한 딸을 출가외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가족안에서 여성을 2차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법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서의 남녀불평등도 해소될 수 없으며, 여아감별낙태로 인한 성비불균형도 막을 수 없고 한국의 인간생태계 파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1992년 현재 대구, 부산등 영남지역의 셋째아이 출생성비는 300:100(남:여)이다.-1994.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3. 호주제의 역사와 외국의 호적.

삼국시대의 호적이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 정도였다면 고려의 호적은 양반과 양민, 천민이라는 신분체제를 바탕으로 요역을 신분을 기초로 부과하였으므로 그 신분을 구분, 확인하는 기능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사회는 모계도 상당히 중시하여 父母 모두를 호의 대표자로 택하였

고 가족의 대표자로서 배우자는 자녀보다 우선하였다. (양반의 호적은 요역을 면제받는 면역증 기능도 수행했고 상민의 호적은 징병이나 부역에 이용하기 위한 문서였다고도 할 수 있다.) 조선은 고려의 호적제도를 승계하고 수정 보완하였는데 그것의 목적 역시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 명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부장 중심적인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친족을 제외하는 등의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호적법과 호적의 기준자를 호주로 삼는 호주제가 일본이 식민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에 이식한 제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일제는 식민지수탈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1911년 1차개정, 1922년 2차개정을 통해 조선민사령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조선호적령을 공포했다. 호주는 출생이나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분가, 일가창립, 입가, 폐가, 폐절가재흥, 부적(符籍), 거주이전, 개명,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과 실권취소, 후견인의 취임, 경질과 그 임무종료 등 모든 신분관계변동을 신고하는 의무자로 규정하였다. 일제는 호주를 통하여 '가(家)'를 파악하고 징병, 징세, 독립군 색출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호주제는 조선초기에 중국에서 전래한 종법제도와 결합하여 광복 이후에도 과거보다 더 강력한 가부장제를 이루는 제도로 확립, 정착되어 여성의 가족내 지위를 약화시키고, 남성에게 종속적인 지위를 고착시켰다. 그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의식도 강화되었다. 냄아선호관을 부추기고 어머니로서의 여성지위도 더욱 약화시켰다. '여성은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2차적인 자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은 이렇듯 일제가 조장한 '호적감정' 때문에 더욱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호주제를 우리 나라에 이식한 일본은 1947년 '가(家)'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고(3세대 호적금지) 호주제를 없앴다.)

중국은 당(唐)시대부터 '호구제도'를 설치하여 사법상, 공법상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후 1955년 치안유지와 도시인구 제한, 신분증명의 목적으로 호적등기제도를 만들었다. 함께 사는 부부라도 동적(同籍)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종속하는 것으로 법을 정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라 한다. 혼인법 제8조는 '혼인등기후 부부쌍방의 합의에 따라 아내는 남편가정의 일원으로 될 수 있고 남편도 아내가정의 일원으로 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 등기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다.

독일의 호적부에는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가족부의 4종류가 있으며 가족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개의 신분법상 사실을 공증하기 위한 것이고 가족부는 혼인부의 기능을 계승한 것으로 부부의 부모, 국적,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프랑스는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용한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 등 세가지 사건별 신분증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외에 1954년부터 가족대장을 마련하여 신분증서를 갈음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철저한 사건별 편제제도를 택하여 신분기록부를 출생, 혼인, 사망으로 나누어 각각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친족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가족집단을 한번에 알 수 없고 각각의 기록간에도 연결이 없다.

이렇게 친족단위로 편제하지 않는 외국의 호적제도는 단순히 신분공증이라는 행정상 목적만을 위한 것이므로 '호적감정', '차별'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혼후 관습에 따라 남편의 성을 따른다고 하여도 남편의 호적에 편입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이 호적을 만드는 것도 아니므로 '남자 집안에의 종속' 또는 '정체감의 상실'등의 관념은 생겨나지 않는다. 더욱이 1991년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결혼후 남편의 성(姓)으로 가족성을 만드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자녀의 성도 부부의 합의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들어있는 권고 사항이기도 하며 스웨덴, 덴마크 등의 나라들은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엄마성을 따르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여아낙태란 상상도 할 수 없다.)

4. 왜 호주제는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가.

조선초기 중국에서 전래한 종법제도는 조상숭배를 중심으로 한 일족(一族)의 통솔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조상제사였다. 따라서 조상제사자는 동일남계혈족이어야 하고 조상제사주행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일제의 식민지배이후 남성만이 될 수 있는 제사주행자=대를 잇는자=호주라는 의식으로 정착했고 이러한 호주제도는 강력한 가부장제도를 형성하는 요소를 이루게 되었다.

호주제도가 이렇게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가 창조한 일제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의 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인 일본구민법상 호주제도의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제도일 뿐이고(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1994) 이로 인해 엄청난 남녀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면 남성들은 "아예 남자들 씨를 말려라! 말려!" 라거나 "호주제, 호적은 족보와

같아서 우리 혈통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대단히 귀중한 미풍양속"이라며 열을 내는 경우가 많다. 혹은 "최근 몇차례의 가족법 개정으로 호주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종이호랑이 같이 되었으므로 호주제의 폐지에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 가문의 뿌리와 혈통'을 남자의 가계만을 기록하는 족보 또는 호적에서 찾을 수 있을까? 남자만이 씨를 생산하며 여자는 밭일뿐이라는 허구에 가득찬 강박감에 매달리는 바보들만 사는 무식한 나라가 아니라면 이제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공문서인 호적에서 뿌리를 찾겠다는 생각은 그만두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아들 낳아 대 잇기'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각각 절반의 씨앗인 난자와 정자와의 수정으로 아기가 탄생하는 이상, 나의 10대 조상은 2^{10}=1024명, 20대 조상은 2^{20}=104만8,576명이 된다. 언제까지 나의 조상이 김수로왕이고 이씨 왕손이고 박혁거세라고 무식하게 우기고만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의미도 없는 성씨에 집착하여 딸만 낳으면 성씨를 잇지 못하고 대를 끊어 조상에 죄를 짓는다고 일년에 3만명씩 골라 죽이는 '잔인한 바보대행진'을 계속 할 것인가? (16C, 17C만 하더라도 40%의 조선인에게 성이 없었고 조선말에 들어서서 80%의 성씨가 급조되었으며 또 명문세도가인양 하기 위해 성과 본을 마구잡이로 바꾸기도 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사망하면 모두 화장하고 사후 1년~3년까지만 딸, 아들 구별하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 남성을 중심으로 위계적 서열을 매기기 위해 이름에 집어넣었던 돌림자도 이미 중국, 대만에서는 쓰지 않으며 화교들도 쓰지 않는다. 제사, 돌림자, 호주제 등은 모두 외래문화이며 우리에게 전수했던 자들은 이미 모두 폐기해버렸는데 우리만 껍데기를 붙잡고 사는 셈이다.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수호하자!"라고 외쳐대면서 말이다.

호주제가 몇차례의 가족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유전에 대한 무지, 출생부터 사망까지 까닭 없이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 절반의 인구를 차지하는 여성의 불행에 대한 무관심, 호주제를 폐지한 이후의 새로운 신분등기제도를 마련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의 무능과 게으름 때문이다. 호주를 기준으로 삼는 호적법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 '종이 호랑이'가 아니다. 엄청나게 광범위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있지 않은가.

5. 호주제 폐지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호적이 친족간의 위계질서 또는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공적인 족보'라도 되는 양 착각하는 사람들은 호주제폐지를 '목숨 걸고 반대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호적, 신분등기서는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여 관리,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공문서이므로 이것에 목숨을 걸고 매달릴 이유는 없다. '성차별을 광범위하게 생산하고 있는' 현재의 호주 중심의 호적제도는 기준자가 호주로 되지 않는 새로운 호적(신분등기제)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헌법 제36조)이라는 헌법원리이념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내용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남편을 호주로 하고 신분행위(출생, 결혼, 이혼, 재혼, 입양, 사망 등)때마다 입적, 제적, 복적을 반복하는 친족단위의 기록형식은 호주와 다른 가족의 관계에서 주종관계를 나타내므로 헌법에 어긋난다. 더욱이 부계혈통 친족집단인 '가(家)'를 기본적 단위로서 기록하므로 이혼한 여성, 혼인외 자녀를 낳은 여성, 혼인외 자녀, 재혼하는 여성과 그의 동거자녀 혹은 비혼(非婚)의 남녀 등을 멸시하고 차별하거나, 전체여성을 '이등 인간'으로 취급하는 등의 '호적감정'을 유발한다. 따라서 여성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의식을 없애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단위를 존중하기 위해서도 '가(家)'제도와 호주제도를 폐지한 호적제도를 만들 것이 요구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장영아 연구원은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6)에서 기본가족별 편제, 1인 1호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ㄱ)기본가족별 편제: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 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라 기준자(색인자)를 정하며(일본에서는 필두자(筆頭者)라는 용어를 쓰며 구미의 나라들은 부부 둘 다의 성명으로 색인을 만들고 있다.) 3세대 동적(同籍)을 금하고 부부와 친자는 동적한다. 국민감정에 순응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실혼가족이나 혼인외자녀, 재혼가족 등에 대한 차별의식은 제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ㄴ)1인1호적: 우리에게 상당히 낯설지만 차별을 없애고 개개인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이며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분등기제도이다. 출생과 함께 개인호적이 만들어지며 그 개인이 대표자가 되어 본인의 모든 신분사항(출생, 혼인, 이혼, 입양, 후견, 관리권, 친권, 사망, 실종 등)을 기록한다. 친족은 부모, 배우자, 자

녀로 한정한다. (형제는 기록하지 않는다.) 복잡한 출,입적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과 호적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현재 1인1호적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며 북한도 1인 1호적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ㄷ)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신분을 공증, 기록하는 제도인 호적제도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하는 주민등록제를 수정 보완하여 합하면 현재의 호적제와 주민등록제의 이중적 국민등록제도를 지양할 수 있다. 국민들의 행정절차가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상의 방안들은 물론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연구,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우리의 호적이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를 단위로 편제되는 한, 광범위한 여성차별은 사라질 수 없다. 또한 가족 내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 '가(家)제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가입적제'가 사라지는 등 공문서인 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차별이 사라지면 비로소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최근의 가정폭력방지특례법의 제정에 대해서 고개숙인 아버지들의 목소리마저 움추러들게 한다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는 등 가정의 파괴와 해체를 오히려 가속시킨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조선일보 '98 6월 30일 팔면경, 7월 10일 이규태칼럼) 또 동성동본금혼법의 위헌판결로 인해 '상피 붙을 것'이 염려된다는(중앙일보 '98. 7. 13. 권오흠) 글이 눈에 띄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오랫동안의 수직적 위계질서 문화에 길들여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거나, 수평적 민주질서에서 나타나는 아름답고 건설적 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걱정으로 보인다.

남녀의 평등이 보장된 북구의 사회가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성장하는 이유는 차별을 거부하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가꾸어 왔으므로 '부정부패'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에 따라 형성되는 일차적이고 원시적인 '끈끈함'에 매달리지 않을 때,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풍요롭게 하는 '전통'들을 만들어낼 때, 공정함이 보장된 법에 따라 남녀가 평등하고 각 개인이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일구어낼 때, 우리 사회 전체의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